석 사 학 위 논 문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2 0 1 5 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임 진 택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양우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at Public Library: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 0 1 4 년 12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임 진 택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양우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at Public Library: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２０１４년 12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임 진 택

국 문 초 록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헌정보학전공
임 진 택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참고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2011년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안을 심층적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행정도와 업무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307개의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부분으로 9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관리 부문이 4개 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 이행정도를 묻는 부분으로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고,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4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기술내용은 설문대상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 둘째,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셋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넷째, 내부 세부 지침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윤리 서약'의 행정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둘째, 세부 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법」 제8조의 규정을 수정하여 관종별, 운영주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산 시스템 강화,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 필요성,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 직원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불균형과 도서관의 예산확보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별 균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어】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목 차

표 목 차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은 정보의 대량 생산 및 유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게 되었으며 세계의 각 국가와 정부는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국민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수많은 정보들이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침해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3년 8월 공공시립도서관 사서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도서관 회원 2만 여명의 인적사항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전달받은 사람은 인적사항 중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뒤 신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사이버머니를 받아서 이를 불법으로 거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이건명, 2005)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3월에 제정하였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도서관 담당직원의 여러 업무 중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 등 비록 '개인정보' 관련법은 강화되었지만 도서관 현장 담당자의 인식 부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보유기간・파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제도적인 제한점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데 방해되는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2011년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안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단행본, 인터넷 신문,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모든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조사하였고,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의 307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 12. 31.기준)」에 수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지역은 317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307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의 공

공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97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22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177개 공공도서관과 11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포함된다.

한편,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307개 공공도서관에 각각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33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별 전산담당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서관 개수와 상관없이 1명의 전산담당자가 여러 곳의 도서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시 S구는 6개의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를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 P시는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담당자는 1명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총 115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 10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기술내용은 설문대상자 중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공공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과 업무에 부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 12. 31.기준)」에 수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의 개수는 865개이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공공도서관 전체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설문조사의 대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현장 실무업무 담당자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보주체' 즉,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Ⅱ. 이론적 배경

2.1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

2.1.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희(2009)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

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 September 1980 OECD.Pt.1.cl.(1)(b)) 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정신적·심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외국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아닌 반드시 살

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

개인정보의 침해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전개에 의거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는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전체 5개 장 2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대하여 김기열(2008)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의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동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 이용·제공의 적절한 통제, 유출 및 남용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이제희, 2009)는 필요성에 따라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부 개정을 통하여 2007. 5. 17. 법률 제8448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명이 변경되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국민의 낮은 개인정보보호의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충돌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수많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아울러 전자정부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을 백안시 하거나 불법화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나 이용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그 안전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었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참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2.1.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2.1.3.1 법의 내용

2011년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이전의 법률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금융보안연구원, 2011).

첫째, 규율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규율대상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보호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범위로 하고 있지만 새로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셋째,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나 제한의 규정이 없었지만,「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의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이나 단체소송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권리침해를 중지하는 단체소송에 대하여도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표 1>에서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표 1>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구 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
보호범위	컴퓨터 등에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에 대한 사전적 제한 규정 없음	원칙적 처리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근거의 경우 예외
유출통지	관련 제도 없음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확대
집단분쟁조정	관련 제도 없음	집단분쟁제도 도입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단체소송	관련 제도 없음	단체소송(권리침해 중지) 도입

2.1.4 공공도서관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거나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류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도서관 담당 직원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료 열람이나 대출, 반납과 같은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반납의 기일이 지나 연체되거나, 이용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대출되었던 장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해당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자가 직접 작성하였지만 동법 개정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만을 작성하거나 고유식별번호 처리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과 관련된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조항은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등이 해당된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회원 탈퇴 업무와 관련된 법조항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가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는 회원 탈퇴를 할

경우 해당 도서관에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의 연체로 인한 타 이용자의 대출 불가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 및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문서에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제2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업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고(제26조3항),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위탁업체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제26조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제29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하고(제28조1항),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8조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제34조).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조항들은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중에 지갑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CCTV 카메라의 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그러나 CCTV 카메라의 정보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알

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35조4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방법과 절차에 맞게 요구할 수 있다(제38조1항).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제38조4항).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내용을 기술하여 게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1항).

2.2 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규정 분석

국내 많은 공공도서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을 운영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개인정보보호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2.2.1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어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파일이나 이용자 DB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대 13개 항목을 지정해 놓고 있었다. 각 파일이나 DB는 보유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둘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 의거하여 수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목적),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업체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업체 실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호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하여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등의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넷째,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등 법조항별로 홈페이지에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도서관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의해 위반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2.2 운영주체별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연구대상인 서울·경기지역 소재 총 307개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274개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인 33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및 게시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적용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를 비교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해당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규칙'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파일명 중 '민원처리'에 관한 파일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둘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 모든 도서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집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셋째,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파일 중에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관리'와 '자원봉사자 관리'등의 파일은 운영주체별 보유기간이 1년으로 같았으며, '도서관 대출관리'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파일의 보유기간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2년으로 짧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2년~5년으로 조금 더 오래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운영주체별 수집 근거에 의거하여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원처리'와 같은 파일의 보유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3년~5년인 반면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5년~10년으로 훨씬 오래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2>로 간단하게 비교해보았다.

<표 2> 운영주체별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항목

운영주체	개인정보파일명	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대출 관리	해당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 아이디, 비밀번호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소, 직장	2년-5년
	홈페이지 관리	해당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 아이디, 비밀번호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소, 직장	2년-5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연락처, 주소	1년
	자원봉사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연락처, 주소	1년
	민원처리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전화번호	3년-5년
교육청	도서관 대출 관리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 아이디, 비밀번호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소, 직장	2년
	홈페이지 관리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규칙,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 아이디, 비밀번호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소, 직장	2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연락처, 주소	1년
	자원봉사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연락처, 주소	1년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성명, 전화번호, 주소	5년-10년

2.3 선행연구

노영희(2012)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ALA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국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관종별 한 기관씩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김송수(2011)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강조하고, 관련 「도서관법」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관련법 개

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항인 ①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④ 도서관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보유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박상근(2009)은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안하였다.

신영진(2008)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호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추진현황을 비교하여 개인정보호보 수준 향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준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기성(2006)은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외 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관리', '도서관 자원 및 시설 사용기록', '웹 서비스', '컴퓨터의 사용', '제3자 보안', '역감시 및 실천대책', '관리제도' 등의 7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건명(2005)은 『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율이 낮은 정보보호 상위집단과 높은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용자별 고유 ID 보유, 시스템 부정접근 방지 규정, 비인가자의 취급/저장 절차 규정, 정보보호시설 운용담당 관리자 지정 등으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전산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업무를 통합하거나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한다. 둘

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유출위험을 최소화한다. 셋째,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서비스팩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및 계정을 즉시 삭제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박윤민(2003)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 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에서 강원도 36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① 운영주체의 이원화, ② 지역간 법정 기준 도달율의 격차, ③ 사서직원의 부족, ④ 운영예산의 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운영주체의 일원화, ② 법정 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지역간 격차 해소, ③ 사서직원의 확충, ④ 정보(자료)의 질의 변화, ⑤ 운영예산의 균형적인 지원 등 도서관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 문헌자료를 조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를 분석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주체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나.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혹은 개인정보취급자별 특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와의 연관관계는 어떠한가?

다.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과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요인은 무엇인가?

3.2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115명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2014년 4월 14일에 배포하여 5월 14일까지 회수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04개로서 회수율은 90.43%로 나타났다. 설문지 내용은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 수는 24문항이며 첫 번째 부분은 9개 문항으로 인구 통계학적 내용을 설문지 문항 Ⅰ에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도서관 유형, 장서규모, 직원 현황, 설립 주체, 개인정보 관련 교육 유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 등을 기술하였다. 설문 문항 중에 장서 규모와 직원 현황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 12. 31.기준)」에 수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을 조사하여 장서 30,000권 이하, 도

서관 직원 10명 이하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많았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대상이 서울·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위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설문지 문항 Ⅱ에서 Ⅳ까지 총 12개 문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부문', '개인정보 수집부문', '개인정보 관리부문', 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3개 문항으로 설문지 문항 Ⅴ에서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문' 으로 기술하여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서관 실정에 맞추어 이행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과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도서관 근무경력,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개인정보 업무 관련 교육 경험 유무, 교육 유형, 도서관 운영 주체, 도서관 규모-장서수량, 도서관 규모-직원 수 등(9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	개인정보 보호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이행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이행여부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이행여부
		개인정보 DB 암호화 이행여부
	개인정보 수집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고지이행여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여부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안내여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수립여부
	개인정보 관리부문(4개 문항)	CCTV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여부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여부
		저장매체 파기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보호이행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평가(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시 문제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3.3 설문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관련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개념의 조작화에 사용된 항목들이 실제로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로 유의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들이 해당 개념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과정은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현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1 설문의 신뢰도 검증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표 4>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Alpha
개인정보 보호	.778
개인정보 수집	.728
개인정보 관리	.797

3.4 인터뷰 실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객관식 문항은 응답자의 응답을 근거로 통계처리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기술한 설문 항목 중에 「개인정보호보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자 중 8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의 인구 통계학적 일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64.4%, 여성이 35.6%로 '개인정보처리자' 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40대가 89.4%로 전체 연령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체의 62.5%로서 5년 미만(37.5%)의 근무자보다 전산 근무 경력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취급업무 관련 교육의 경우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세미나 등을 참가하여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과, 회사에서 주최하는 전산교육, 또는 외부 위탁 교육업체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83개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1개소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장서 수량이 50,000권 이상의 도서관이 전체 응답자의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서 직원 수에서도 10명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1.8%로서 10명 미만(18.2%)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104

구 분			응답자 수	퍼센트
성별	남		67	64.4
	여		37	35.6
연령	20대		3	2.9
	30대		43	41.3
	40대		50	48.1
	50대 이상		8	7.7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9	18.3
	2년 이상~5년 미만		20	19.2
	5년 이상~10년 미만		32	30.8
	10년 이상		33	31.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4	13.5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28.8
	1년 이상~3년 미만		26	25.0
	3년 이상		34	32.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관련 교육 경험	있다		104	100.0
교육 받은 내용 *응답자만 처리	개인 교육 참여		32	29.4
	전체 교육	사내 전산 교육	33	32.4
		외부 위탁 교육	39	38.2
	소계		104	100.0
근무 도서관의 운영 주체	지자체		83	79.8
	교육청		21	20.2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13.5
	50,000권 이상		90	86.5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9
	5명 이상~10명 미만		17	16.3
	10명 이상~15명 미만		37	35.6
	15명 이상		48	46.2
합계			104	100.0

4.2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8.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00.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에 대한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2명으로서 질문에 대한 무응답을 나타내고 있다(<표 6 > 참조).

<표 6> 개인정보 보호 부문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행	102	98.1
	무응답	2	1.9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이행	104	1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기 업데이트	이행	104	100.0
합계		104	100.0

4.3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2명(98.1%)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명(1.9%)으로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장서 수량이나 사서직원이 적을 뿐 아니라 '전산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고 데이터만 전산작업으로 관리하는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7>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95.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무응답인 응답자(4.8%)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개인정보 수집 부문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이행	102	98.1
	미이행	2	1.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이행	99	95.2
	무응답	5	4.8
합계		104	100.0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당 없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운영주체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미이행'과 '해당없음'이라고 각각 2명씩 응답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2년,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1년 미만인 담당자들이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서관 규모가 크고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길고 사서 직원 수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잘 이행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여부

구 분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90.9)	0	(.0)	2	(9.1)	22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0	(.0)	32	(100.0)
	10년 이상	31	(100.0)	0	(.0)	0	(.0)	3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2	(85.7)	0	(.0)	2	(14.3)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28	(93.3)	2	(6.7)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9	(95.2)	2	(2.4)	2	(2.4)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75.0)	2	(12.5)	2	(12.5)	16	(100.0)
	50,000권 이상	88	(100.0)	0	(.0)	0	(.0)	88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0	(.0)	0	(.0)	2	(100.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0	(.0)	37	(100.0)
	15명 이상	46	(95.8)	0	(.0)	0	(.0)	48	(100.0)
합계		100	(96.2)	2	(1.9)	2	(1.9)	104	(100.0)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1%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89.5%, 2-5년 미만은 90.9%, 5-10년 미만은 100%, 10년 이상은 100%로 도서관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85.7%, 6개월-1년 미만은 93.3%, 1-3년 미만은 100%, 3년 이상은 1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5.0%로 50,000권 이상인 집단의 10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10명 미만은

89.5%, 10-15명 미만은 100%, 15명 이상은 95.8%로 사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지만 수립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9>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구 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합계	
		이행		미 이행		빈도	%
		빈도	행 %	빈도	행 %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4	(73.7)	5	(26.3)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15	(75.0)	5	(25.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8	(75.0)	6	(25.0)	24	(100.0)
	10년 이상	34	(82.9)	7	(17.1)	4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6개월 미만	12	(100.0)	0	(.0)	12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3	(65.0)	7	(35.0)	2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7	(71.1)	11	(28.9)	38	(100.0)
	3년 이상	29	(85.3)	5	(14.7)	34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59	(77.6)	17	(22.4)	76	(100.0)
	교육청	22	(78.6)	6	(21.4)	28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100.0)	0	(.0)	12	(100.0)
	50,000권 이상	69	(75.0)	23	(25.0)	92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사서 직원수)	5명 이상~10명 미만	17	(100.0)	0	(.0)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29	(65.9)	15	(34.1)	44	(100.0)
	15명 이상	35	(81.4)	8	(18.6)	43	(100.0)
합계		81	(77.9)	23	(22.1)	104	(100.0)

4.4 개인정보 관리 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6.9%로 대부분이었고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3.1%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89.5%, 2-5년 미만은 45.0%, 5-10년 미만은 83.3%, 10년 이상은 82.9%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2-5년 미만인 집단보다 2년 미만, 5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100.0%, 6개월-1년 미만은 53.6%, 1-3년 미만은 57.7%, 3년 이상은 10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3년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 미만, 3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50,000권 이상인 집단의 7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구 분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합계	
		이행		해당없음		빈도	%
		빈도	행 %	빈도	행 %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7	(89.5)	2	(10.5)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9	(45.0)	11	(55.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25	(83.3)	5	(16.7)	30	(100.0)
	10년 이상	29	(82.9)	6	(17.1)	35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6개월 미만	14	(100.0)	0	(.0)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5	(53.6)	13	(46.4)	28	(100.0)
	1년 이상~3년 미만	15	(57.7)	11	(42.3)	26	(100.0)
	3년 이상	36	(100.0)	0	(.0)	36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63	(77.8)	18	(22.2)	81	(100.0)
	교육청	17	(73.9)	6	(26.1)	23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100.0)	0	(.0)	14	(100.0)
	50,000권 이상	66	(73.3)	24	(26.7)	90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사서 직원수)	5명 미만	2	(100.0)	0	(.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17	(100.0)	0	(.0)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24	(68.6)	11	(31.4)	35	(100.0)
	15명 이상	37	(74.0)	13	(26.0)	50	(100.0)
합계		80	(76.9)	24	(23.1)	104	(100.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없다는 응답이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26.3%, 2-5년 미만은 35.0%, 5-10년 미만은 9.4%, 10년 이상은 9.1%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집단보다 5년 미만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14.3%, 6개월-1년 미만은 36.7%, 1-3년 미만은 0.0%, 3년 이상은 14.7%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 1년 이상인 집단보다 6개월-1년 미만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로 교육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은 이행이 100.0%, 5-10명 미만은 29.4%, 10-15명 미만은 29.7%, 15명 이상은 0.0%로 사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집단보다 5명 미만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에 대하여 해당없음(82.7%)의 응답이 이행(17.3%)보다 많은 이유는 '전산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는 100% 위탁업체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83명) 중 21.7%(18명) 만이 자체적으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여부

구 분		이행		해당없음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5	(26.3)	14	(73.7)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7	(35.0)	13	(65.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	(9.4)	29	(90.6)	32	(100.0)
	10년 이상	3	(9.1)	30	(90.9)	33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2	(14.3)	12	(85.7)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1	(36.7)	19	(63.3)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0	(.0)	26	(100.0)	26	(100.0)
	3년 이상	5	(14.7)	29	(85.3)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18	(21.7)	65	(78.3)	83	(100.0)
	교육청	0	(.0)	21	(100.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2	(14.3)	12	(85.7)	14	(100.0)
	50,000권 이상	16	(17.8)	74	(82.2)	90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00.0)	0	(.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5	(29.4)	12	(70.6)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11	(29.7)	26	(70.3)	37	(100.0)
	15명 이상	0	(.0)	48	(100.0)	48	(100.0)
합계		18	(17.3)	86	(82.7)	104	(100.0)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89.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42.1%, 2-5년 미만은 100.0%, 5-10년 미만은 100.0%, 10년 이상은 100.0%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21.4%, 6개월-1년 미만은 100.0%, 1-3년 미만은 100.0%, 3년 이상은 10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50,000권 이상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의 2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은 이행이 100.0%, 5-10명 미만은 35.3%, 10-15명 미만은 100.0%, 15명 이상은 100.0%로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만 집단보다 5명 미만,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

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에 대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100%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파기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도서관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보다 이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여부

구 분		이행		미이행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8	(42.1)	11	(57.9)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100.0)	0	(.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32	(100.0)
	10년 이상	33	(100.0)	0	(.0)	33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3	(21.4)	11	(78.6)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100.0)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2	(86.7)	11	(13.3)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3	(21.4)	11	(78.6)	14	(100.0)
	50,000권 이상	90	(100.0)	0	(.0)	90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00.0)	0	(.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6	(35.3)	11	(64.7)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37	(100.0)
	15명 이상	48	(100.0)	0	(.0)	48	(100.0)
합계		93	(89.4)	11	(10.6)	104	(100.0)

4.5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이 3.32점, 2-5년 미만이 3.80점, 5-10년 미만이 4.19점, 10년 이상이 4.27점으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도서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표 13> 참조).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이 3.14점, 6개월-1년 미만이 3.97점, 1-3년 미만이 4.23점, 3년 이상이 4.15점으로 대체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3.88점, 교육청이 4.38점으로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가 지자체인 집단보다 교육청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이 3.14점, 50,000권 이상이 4.11점으로 장서 수량이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보다 50,000권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이 4.00점, 5-10명 미만이 3.59점, 10-15명 미만이 3.97점, 15명 이상이 4.13점으로 사서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3>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a	19	3.32	.671	12.705***	.000	bcd>a
	2년 이상~5년 미만b	20	3.80	.523			
	5년 이상~10년 미만c	32	4.19	.535			
	10년 이상d	33	4.27	.626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a	14	3.14	.363	11.624***	.000	bcd>a
	6개월 이상~1년 미만b	30	3.97	.718			
	1년 이상~3년 미만c	26	4.23	.765			
	3년 이상d	34	4.15	.359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83	3.88	.632	9.825**	.002	
	교육청	21	4.38	.74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3.14	.363	31.652***	.000	
	50,000권 이상	90	4.11	.626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a	2	4.00	.000	2.722*	.048	d>b
	5명 이상~10명 미만b	17	3.59	.939			
	10명 이상~15명 미만c	37	3.97	.645			
	15명 이상d	48	4.13	.570			

*p<.05,**p<.01,***p<.00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가 24.4%,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자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12.2%,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다는 응답이 9.8% 등의 순으로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또는 '인력부족이 문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4> 참조).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관련 법규나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부족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거부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측면도 업무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번 호	문 제 점	빈도	퍼센트
1	인력부족	15	36.6
2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10	24.4
3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자 관리가 어려움	5	12.2
4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4	9.8
5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문제	4	9.8
6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설득하기 어려움	1	2.4
7	개인정보의 전체적인 관련법규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숙지가 부족함	1	2.4
8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했는데 추후 요청했던 정보주체의 항의로 곤란을 겪음	1	2.4
합계		41	100.0

*응답자만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적인 교육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 지침 개정 필요가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요인

개 선 점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적 교육 필요	31	21.7
세부 지침 개정 필요	8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인력 확충	5	10.9
벌칙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	1	2.2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 위주로의 예방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1	2.2
합계	46	100.0

*응답자만 처리

4.6 인터뷰 내용 분석

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중 8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응답하여 제시된 내용은 4가지였으며, 대표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체 응답자 중 7명이 응답하였다. ‘직원회의를 이용한 주1회 「개인정보보호법」 숙지 교육’, ‘월간 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교육’, ‘매월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 직원 교육’, ‘타 지역 공공도서관 연계에 의한 상호 교류’ 등 여러 가지 내용의 답변이 있었지만 응답자 B씨의 답변을 소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공공기관의 자체 전산교육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미이수’한 직원은 교육과목을 ‘이수’할 때까지 수강을 반복하고, ‘이수’ 혹은 ‘수료’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가로서 전문호칭 부여 혹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운영주체별로 업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세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명이었다. ‘도서관 상호 교류를 통한 지침 통일’, ‘도서관 대회를 이용한 세부 지침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의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자 H씨는 「도서관법」 제8조에 대하여 말하였다. “「도서관법」 제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으로 모든 도서관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종별, 운영주체 등 서로 다른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조례나 규칙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에 적용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규범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서관법」 제3항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으로 도서관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문구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세부 지침에 대한 개선으로 응답자 K씨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적용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원 가입'에 대한 수집 항목을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혹은 '이름', '이메일주소' 등 현재 수집하고 있는 항목 5~6가지 중에 2~3가지만을 수집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반영'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L씨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산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였고,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 A씨는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충 등을 지적하였다. 응답자 C씨는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도서관 현실과 자치구별 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한계점, 지역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 반영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구에 일정부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D씨는 "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만큼 과태료 및 책임소재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담당 사서직원이나,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Ⅴ. 논의 및 제언

5.1. 개인정보 보호 부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별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도서관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연령은 30대~40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은 유형은 '개인적 교육 참여', '회사 전산 교육', '외부 위탁 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지만, 교육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거나, 보다 '잘 이행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설문 응답(<표 13> 참조)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서관 근무 경력'이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등 개인별로 그 이행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 규범을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반듯이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윤리 서약'과 같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교육 이행에 응답하였지만, 무응답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조치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역 G구, K구, S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의 하나인 'I-Pin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기존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I-Pin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많은 도서관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여부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절차 안내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이행', '해당없음'의 응답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얻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응답의 내용으로 보아 '개인정보' 수집 부문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의 경우는 빠르게 도입하여 이행하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몇 가지의 정보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경우나 이러한 정보가 해킹, 관리소홀 등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 대비 대응절차 수립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3. 개인정보 관리 부문

개인정보의 관리 부분을 정리하면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에 대

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S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면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 대신에 '통신담당자'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 결과 CCTV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시설분야로 인식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당 설문에 대하여 '해당없음'이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은 '이행' 보다 오히려 '미이행'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산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업체가 전적으로 위임하여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청의 경우는 모든 도서관이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응답자 중 18명만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4.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부문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분을 정리하면 도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길고, 장서 수량이 50,000권 이상인 집단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량이나 관련 예산 확보, 인력관련 요인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5.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업무 수행 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 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존 데이터와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대한 도서관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면 자치구별로 도서관 개수는 차이가 있다. 적은 곳은 한 두 개, 많은 곳은 열 개가 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개수는 많지만 그곳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원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공공도서관의 개수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307개의 공공도서관을 115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숫자상으로는 1명이 3개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실제 자치구별 도서관 개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 기관의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입장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있어도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뒤따르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내부자 소행',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 등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위탁 업체 직원' 들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제언 사항은 5.6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5.6.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기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세부 지침 개정 필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위반 시 벌칙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개선점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지속적 교육면에서 사내 자체 전산교육 및 외부강사 위탁교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이수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교육 '미이수'와 차등을 두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부 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는 「도서관법」 제8조 1항과 3항의 규정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도서관들은 관종별, 운영주체별로 각각 다

른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이행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조례나 규칙이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에 대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강화, 백신 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 필요성,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 직원 확충'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불균형과 도서관의 예산확보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별 균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면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여부 등은 관련 설문내용의 ‘미이행’ 과 ‘해당없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설문의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개인정보보보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은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산담당자’가 담당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 도서관에 ‘전산담당자’가 한 명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도서관이 3~4군데, 10개가 넘는 도서관의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배치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력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더라 하도라도 한 순간의 실수, 해킹, 내부자 소행, 외부 위탁직원의 실수 등으로 유출 된다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위탁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기관별, 운영주체별 각각 다른 도서관 내부 규정을 두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다른 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조항에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적용 사례 등 공공도서관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요구와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수자에게는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잘 이행한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개인별로 이행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윤리서약'과 같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 행정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업체의 담당직원들까지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한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수많은 기업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DB 등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탁 업체 직원의 실수나 위탁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 업체의 담당 직원들은 반드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지침이나 규정들은 관종별, 운영주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된 규정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정되어야 하는 관련법은 「도서관법」 제8조의 내용이다. 제8조의 내용만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통일되게 개정된다면 모든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더욱 원만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확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족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력도 확충할 수 있고,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자치구마다 예산의 차이가 있다. 지역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예산반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에 일정하게 균등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도서관에서 훨씬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기성(2006),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송수(2011),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법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영석(2013),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 324.

김현수·박춘식(200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제13권 제5호, 96~103.

노영희(2012),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 220.

박상근(2009),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윤민(200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성낙인(199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2권 제3호, 528.

신영진(2008),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22.

이제희(2009),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필재(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 석사학위논문.

조규범(2002),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359~389.

<보고서 및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2013),「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정보통신부(2005),「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편집부(2013),「국가정보보호백서」, 진한엠앤비.
현대호(2000),「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손경호(2014),「지디넷코리아」 http://www.zdnet.co.kr

<웹 사이트>

강남도서관 : http://gnlib.sen.go.kr
강동도서관 : http://gdlib.sen.go.kr
강동구립해공도서관 : http://www.gdlibrary.or.kr/hglib
강서도서관 : http://gslib.sen.go.kr
강북문화정보센터 : http://gangbuklib.seoul.kr
개포도서관 : http://gplib.sen.go.kr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 http://www.gclib.go.kr
광진정보도서관 : http://www.gwangjinlib.seoul.kr
경기도립과천도서관 : http://www.kwalib.kr
경기도립녹양도서관 :. http://www.nylib.or.kr
경기도립성남도서관 : http://www.snlib.or.kr
경기도립중앙도서관 : http://www.gglib.or.kr
경기평생교육학습관 : http://www.gglec.go.kr
고덕평생학습관 : http://gdlic.sen.go.kr
고양시도서관센터 : http://www.goyanglib.or.kr
고척도서관 : http://gclib.sen.go.kr
구로도서관 : http://grlib.sen.go.kr
구로구통합도서관 : http://lib.guro.go.kr
구립증산정보도서관 : http://www.jsplib.or.kr

금융보안연구원 : http://www.fsa.or.kr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http://www.geumcheonlib.seoul.kr
남산도서관 : http://nslib.sen.go.kr
남양주시도서관센터 : http://lib.nyj.go.kr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노원구립도서관 : http://www.nowonlib.kr
논현도서관 : http://nhlib.gangnam.go.kr
대림정보문화도서관 : http://www.dllib.or.kr
도봉도서관 : http://dblib.sen.go.kr
도봉문화정보센터 : http://www.dobonglib.seoul.kr
동대문도서관 : http://ddmlib.sen.go.kr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http://www.l4d.or.kr
동두천시립도서관 : http://city.ddclib.net
마포구립서강도서관 : http://sglib.mapo.go.kr
마포평생학습관 : http://mplic.sen.go.kr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부천시립도서관 : http://www.bcl.go.kr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 : http://lib.sdm.or.kr
서울도서관 : http://lib.seoul.go.kr
서울중구통합전자도서관 : http://www.e-junggulib.or.kr
성동구립도서관 : http://www.sdlib.or.kr
성북정보도서관 : http://lib.sblib.seoul.kr
송파도서관 : http://splib.sen.go.kr
수원시도서관사업소 : http://www.suwonlib.go.kr
시흥시중앙도서관 : http://www.shcitylib.or.kr
안산중앙도서관 : http://lib.iansan.net
안양시립도서관 : http://www.anyanglib.or.kr
용산도서관 : http://yslib.sen.go.kr
용인시도서관 : http://www.yonginlib.go.kr

은평구립도서관 : http://www.eplib.or.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contents.archives.go.kr
종로도서관 : http://jnlib.sen.go.kr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http://www.jungnanglib.seoul.kr
파주시도서관 : http://www.pajulib.or.kr
포천시립도서관 : http://lib.pcs21.net
하남시신장도서관 : http://www.hanamlib.go.kr
화성시립도서관 : http://www.hscity.or.kr
The Seattle Public Library : http://www.spl.org
OECD : http://www.oecd.org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서울,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특정도서관이 표시되지 않고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통계 처리되어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귀 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Ⅰ. 다음은 귀하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항입니다. 가장 적합한 번호에 체크하여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도서관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4. 귀하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 귀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5.1 질문으로 가세요)　　② 없다
5.1. 개인정보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6.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지자체(시, 도)　② 교육청　③ 사립　④ 기타(　　)

7.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일반공공도서관　② 어린이도서관
③ 장애인도서관　④ 기타(　　)

8.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장서 수량)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00권 미만　② 10,000권 이상 ~ 30,000권 미만
③ 30,000권 이상 ~ 50,000권 미만　④ 50,000권 이상

9.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사서 직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 ~ 10명 미만
③ 10명 이상 ~ 15명 미만　④ 15명 이상

Ⅱ~Ⅴ. 다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 도서관의 규정 이행정도 내용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여 주세요.

Ⅱ. 개인정보 보호 부문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2.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일부만 해당되시면 기타에 작성하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 한 가지만 해당되시면 기타에 작성하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5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4. 개인정보 DB의 중요필드는 암호화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5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Ⅲ. 개인정보 수집 부문

1.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3.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일부만 해당되시면 기타에 작성하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8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4.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Ⅳ. 개인정보 관리 부문

1.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한 가지만 해당되시면 기타에 작성하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설치 제한)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관리 및 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4.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
1) 이행
2) 미 이행
3) 해당 없음
4) 기타 ( )

Ⅴ.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문

1. 귀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0점 - 5점)

점수	0	1	2	3	4	5	
전혀 이행 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잘 이행 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업무 수행시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 귀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설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at Public Libraries: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Lim, Jin Taek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at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o develop and present a model scheme to improve the statu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to make in-depth comparative research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efore and after its amendment in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were reviewed to see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was well applied to the homepages managed by the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by 'computation manager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identify problems they had i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115 computation manager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t 307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tained a total of 24 items in three areas: nine items concern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our concerning each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three concerning the level of implemen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via e-mail and 104 copi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from April 14 to May 14, 2014. Eight respondents were asked to give interviews to analyze subjective description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the problems in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the Act can be summarized in four categories as follows: 1) manpower shortage, 2) problems with program compatibility, 3)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4) problems with detailed internal guidelines. To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ufficient budget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the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hared,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as needed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the Act.

To raise the level of implementing the Act at public librar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m to take courses related to the Act at cyber education center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get clear awareness on the basis of educational reinforcement, provide them with mileage and incentive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ir du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enthusiasm, and develop an administrative device for 'ethics pledge' in provid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Library Act and make detailed uniform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Act at

public libraries operated on the basis of different regulations by library type and opera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reflect a budget to reinforce a computation system, provide vaccine programs and related updates, take technical measures for securing safety, for example, through DB encryption, and supplement computation personnel for its efficient management. To do this, local governments need to recognize budgetary imbalance and the limitations in securing a budget for libraries and to designate the budget necessary to implement the Act at libraries in the form of 'special subsidies' and reflect the budget in the way that it is distributed evenly among autonomous distri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become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y establishing reinforced 'regulations on reward and punishment' which even cover both librarian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businesses in commission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at the businesses as well as penal regulations against those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ith the objective of reinforcing the security and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reinforcement of the penal regulations.'

Keywords : Public Librar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putation managers.